

국토교통부 「광역철도 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정내용 소개

Job Manual for Metropolitan Area Railway Project in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이장호

서론

우리나라는 광역통근권 확장에 따른 통행량 및 통행시간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 대책 차원의 시설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광역철도 사업을 별도로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과거 광역철도 사업 추진 단계에서 시행주체에 따른 지원비율의 차등문제, 일부 도시철도 연장사업의 광역철도 지정문제 등이 발생되었으며, 광역철도 지정요건에 관한 모호함 등도 논란이 되었다. 이에 2014년 3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내용을 구체화하고 광역철도 유형별 시행·운영 주체, 시설물 성격별 재원의 분담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지난 5월 「광역철도 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였다. 지침의 내용은 크게 광역철도 시행 및 운영주체, 광역 지자체간 재원분

담방안,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추진절차와 광역철도 지정 시 고려사항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광역철도사업의 시행 및 운영주체

우선 광역철도 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였는데, 크게 도시철도 연장형, 기존선 개량형, 신설형으로 구분하고, 해당 유형별로 사업의 시행 및 운영주체를 구체화하였다.

- 1) 도시철도 연장형 사업 : 기존 노선과의 연계 및 기존 도시철도 운영 효율성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및 운영토록 함
- 2) 기존선 개량형 사업 : 기존의 국가철도망으로서 사업시행은 국가가 하되, 한정된 지역 내에서 도시철도 기능을 하는 점을 고려하여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함

- 3) 신설형 사업 : 국가철도망 추진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국가가 시행·운영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시행요구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운영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투자사업을 우선 검토할 수 있음

장하는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시속 40킬로미터) 이상일 것

또한, 광역철도 사업의 지정폐지는 광역철도 지정·고시 이후 위의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 광역철도의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공청회를 열어 주민, 관계전문가 및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듣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철도의 지정을 폐지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사업시행도중 광역철도의 지정 폐지로 인하여 광역철도 사업비용의 분담비율이 변경되더라도 지정폐지 시까지 관계 시·도가 분담한 비용은 지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관계 시·도는 광역철도 지정 폐지 당해 연도에 책정된 비용 분담분은 부담하여야 한다.

광역철도사업의 지정

광역철도사업의 지정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시행령 4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광역철도 지정요건은 아래와 같다.

- 1) 시도간의 일상적인 교통수요를 대량으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도시철도 또는 철도이거나 이를 연결하는 도시철도 또는 철도일 것
- 2) 전체 구간이 대도시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포함되고, 권역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점을 중심으로 반지름 40킬로미터 이내일 것
 - 가. 수도권: 서울특별시청 또는 강남역
 - 나. 부산·울산권: 부산광역시청 또는 울산광역시청
 - 다. 대구권: 대구광역시청
 - 라. 광주권: 광주광역시청
 - 마. 대전권: 대전광역시청
- 3) 표정속도가 시속 50킬로미터(도시철도를 연

광역철도사업의 재정분담

광역철도사업 시행 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사업비 분담비율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표 1과 같이 적용한다.

만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광역철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민간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공제한 사업비에 대하여 위의 분담비율을 적용하며, 광역철도 지정 전 발생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제안자가 부담토록 한다. 또한, 광역철도사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는 때에는 위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표 1. 광역철도사업의 재정분담기준

구분	광역철도 건설	운영중인 광역철도 연장 건설
사업시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 운영기관 사업시행자와 동일)
사업비 분담률 (국가:지자체)	70:30 (지방자치단체시행의 경우, 서울특별시 50:50)	- 광역철도 요건 충족시 : 70:30 * 지방자치단체시행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50:50 - 광역철도 요건 미충족시 : 60:40 * 서울특별시는 40:60

복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분담토록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해당 시·도와 관계 시·군·구가 분담하는 경우의 분담률은 시·도지사가 관계 시장, 군수,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다.

- 1) 독립시설 : 관련 지방자치단체 경계 내에 건설되는 시설의 실제 소요 사업비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 2) 공동시설 : 위치, 거리에 관계없이 관련 지방자치단체가 균등분담 (단, 기존선을 연장하는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의 거리 비례로 계산된 금액을 부담)

국고지원은 국가시행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에 따라 국고지원방식이 달라지는데, 국가시행사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지방비를 납입하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이에 비례하여 국고를 집행함으로써 연도별 매칭펀드 방식의 사업비 분담률을 준수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 시행사업의 경우는 국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보조금으로 사업비를 교부한다. 만일,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예산을 적기에 계상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보조금 또는 교부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기타 신도시건설 등 특정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협의 후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분담률을 정할 수 있다.

광역철도사업의 추진절차

광역철도사업의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대도시권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립·고시 :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관계 시도의 의견을 들어 광역철도사업의 건설과 개량, 재원의 조달과 투자비분담 등에 대한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함

- 2) 기본구상 확정 : 국토교통부는 장래교통수요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고,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내용에 관한 기본구상을 확정함
 - 가. 사업의 필요성
 - 나. 국토이용계획·도시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 다. 사업시행에 따른 위험요소 예측
 - 라. 사업 예정지의 입지 조건
 - 마. 사업 규모 및 공사비
 - 바. 사업시행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 사. 기대효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3) 예비타당성조사 : 국토교통부는 착수시기가 도래하는 광역철도 사업에 대하여 관련 지자체의 의견을 들어 가급적 착수시기 전연도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함
- 4) 사업기본계획 수립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광역철도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면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함
 - 가. 사업의 명칭, 목표 및 기본 방향
 - 나. 사업내용, 공사기간, 시행자 및 공사수행계획 (시행 및 운영주체 포함)
 - 다.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비용분담내용 포함)
 - 라. 연차별 공사시행계획
 - 마. 개별공사별 투자우선순위
 - 바.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 사. 환경보전계획
 - 아. 기대효과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표 2. 광역철도사업의 수행절차 및 내용

구분	국토교통부	사업시행자	지자체, 관계기관	비고
계획	대도시권광역교통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고시	업무지원	업무협조	
	기본구상 확정	기본구상 수립 및 업무지원	기본구상 확정(업무협조)	
	예비타당성 조사 요구	업무지원	예비타당성 조사요구(업무협조)	기획재정부장관
	기본계획 수립	기본계획 수립 및 업무지원	기본계획 수립(업무협조)	
	노선 지정·고시 - 사업시행확정	업무지원	노선 지정·고시(업무협조)	
	예산 확보	출연금 및 보조금 예산요구	예산배정요구 (사업비 세출 및 출연금)	사업비 분담 사전협의
사업비 분담액 결정 및 통보		사업비 분담액 납입통보	사업비 분담액 확보 및 납부	
사업 시행	사업시행 협의	사업 착수	사업시행 협의	
		사업착수 보고 및 통보		
	집행실적 분석	집행실적 보고 및 통보	집행실적 보고 및 검토	
평가	시정조치	시정사항 이행	개선요청	

자료: 국토교통부, 「광역철도 사업 업무처리 지침」, 2014. 5

- 5) 건설 및 개통 : 사업시행자는 기본계획이 확정·고시되면 설계·시공 및 개통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설명회 개최계획, 연차별 사업비 집행계획, 연차별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비 분담비율 조정 결과 등을 관계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광역철도사업의 예산편성 및 집행

광역철도사업의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시행자가 전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납부내역과 다음 연도 광역철도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는 동 계획서를 검토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국가재정법 제28조)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기초로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관련 지자체와 협의하여 다음 연도 광역철도사업 출연금 예산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요구하며(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 국토교통부 예산안과 정부예산안 제출 시기(5월 31일 및 10월 말) 및 정부예산 확정(12월) 후 사업시행자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 지방비를 확보하도록 조치한다.

광역철도사업의 수행

광역철도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는 다음과 같이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 관련 지자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 1) 설계착수 : 1주일 이내
- 2) 공사 착공 : 10일 이내
- 3) 연차별 총사업비 조정 및 사업비 분담비율 조정 결과 : 매년 2월
- 4) 개통, 홍보 및 행사계획
- 5) 사업 수행 중 이례적인 현안이 발생한 경우 : 즉시
- 6) 사업완료 : 2개월 이내

국토교통부, 사업시행, 관련 지자체의 계획, 예산확보, 사업시행, 평가 등 단계별 수행내용에 대하여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또한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중 매년 결산국회 결과에 따라 임시 정산을 실시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며, 해당 사업 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비에 대한 정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계 시·도와 협의 후 관련 서류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국토교통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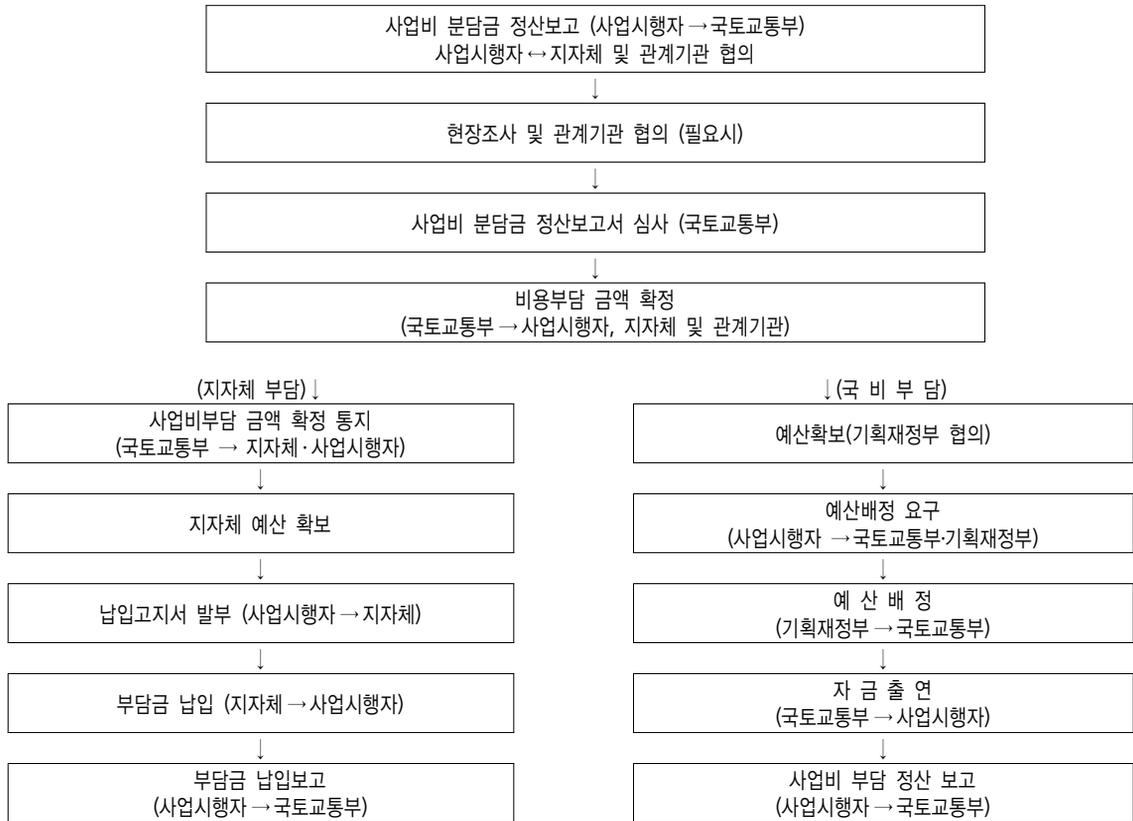


그림 1. 광역철도사업 사업비 정산절차

정산보고서를 기초로 제 규정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광역철도 사업비 부담액을 확정하고 사업시행자와 관계 시·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정리하면 그림 1과 같다.

결론

향후 광역권 통행규모의 지속적 증가와 맞물려 광역교통시설의 투자소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철도부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하리라 판단된다.

과거 논란이 되었던 광역철도 사업 지정요건, 사업유형별 시행 및 운영주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분담비율 등의 문제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및 앞서 소개한 「광역철도 사업 업무처리 지침」의 제정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 기대된다.

특히, 광역철도사업의 추진절차 및 수행내용에 따라 국토교통부, 관련 지자체, 사업시행자 등의 역할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향후 광역철도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효율성과 의사결정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철도국 광역도시철도과 (2014), 광역철도 사업 업무처리 지침, 국토교통부.